

##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(받을어음 수탁관리용)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3.10.1
2. 개정내용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~~~~~ (이하 "을" 이라 한다)은 받을어음 수탁관리를 위한 "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"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</p> <p>제 1조 목 적 이 계약은 "을"이 "갑"의 “가상계좌서비스 (받을어음 수탁관리용)” 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조 업무범위</p> <p>① “갑” 이 “을” 의 요청에 따라 “을” 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“을” 에게 전송하는 업무</p> <p>② “갑” (이하 “갑” 의 모든 영업점 포함)이 “을” 의 받을어음을 “을” 또는 “을” 의 거래처(이하 “병” 이라 한다)로부터 “을” 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수탁(수납)받아 보관 및 교환회부하는 업무(이하 “받을어음</p>	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~~~~~ (이하 "회사" 라 한다)은 받을어음 수탁관리를 위한 "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"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</p> <p>제 1조 목 적 이 계약은 "회사"가 "은행"의 “가상계좌서비스 (받을어음 수탁관리용)” 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조 업무범위</p> <p>① “은행” 이 “회사” 의 요청에 따라 “회사” 가 사용할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“회사” 에 전송하는 업무</p> <p>① “은행” (이하 “은행” 의 모든 영업점 포함)이 “회사” 의 받을어음을 “회사” 또는 “회사” 의 거래처(이하 “고객” 이라 한다)로부터 “회사” 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수탁(수납)받아 보관 및 교환회부하는 업무(이하 “받을어음</p>	<p>“갑” 과 “을” ” 병” 을 “은행” 과 “회사” ” 고객” 으로 문구변경</p>

<p>수탁관리 업무” 라 한다)</p> <p>③ “<u>을</u>” 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“<u>을</u>” 이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</p> <p>제3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4조 계좌의 지정</p> <p>① “<u>을</u>” 은 “<u>값</u>” 이 제 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“<u>을</u>” 이 이용할 수탁계좌와 동 수탁어음을 결제기일에 입금할 예금계좌(이하 “수탁어음 입금계좌” 라 한다) 및 수수료 결제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 (표생략)</p> <p>② 수탁어음 입금계좌 및 수수료 결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한다.</p> <p>③ “<u>을</u>” 은 수탁계좌, 수탁어음 입금계좌, 수수료 결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“<u>값</u>”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“<u>값</u>” 이 변경 사실을 전산으로 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p>제 5조 업무 처리</p> <p>제 2 조에 의한 <u>정한(삭제)</u> 수탁어음 업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.</p> <p>1. “<u>을</u>” 또는 “<u>병</u>” 이 어음실물을 “<u>값</u>” 에게 제출하여 수탁 의뢰하면 “<u>값</u>” 은 어음실물을 수탁 한 후 수탁확인증을 수탁의뢰인에게 교부한다. 이때 “<u>을</u>” 은 어음의 배서란에 “<u>을</u>” 이 직접 또는 “<u>병</u>” 으로 하여금 “<u>을</u>” 명의로 배서하도록</p>	<p>수탁관리 업무” 라 한다)</p> <p>② “<u>회사</u>” 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“<u>회사</u>” 가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</p> <p>제3조 (좌동)</p> <p>제 4조 계좌의 지정</p> <p>① “<u>회사</u>” 는 “<u>은행</u>” 이 제 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“<u>회사</u>” 가 이용할 수탁계좌와 동 수탁어음을 결제기일에 입금할 예금계좌(이하 “수탁어음 입금계좌” 라 한다) 및 수수료 결제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 (좌 동)</p> <p>② 수탁어음 입금계좌 및 수수료 결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한다.</p> <p>③ “<u>회사</u>” 는 수탁계좌, 수탁어음 입금계좌, 수수료 결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“<u>은행</u>”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“<u>은행</u>” 이 변경 사실을 전산으로 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p>제 5조 업무 처리</p> <p>제 2 조에 의한 수탁어음 업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.</p> <p>1. “<u>회사</u>” 또는 “<u>고객</u>” 이 어음실물을 “<u>은행</u>” 에 제출하여 수탁 의뢰하면 “<u>은행</u>” 은 어음실물 을 수탁 한 후 수탁확인증을 수탁의뢰인에게 교부한다. 이때 “<u>회사</u>” 는 어음의 배서란에 “<u>회사</u>” 가 직접 또는 “<u>고객</u>” 으로 하여금 “<u>회사</u>” 명의로 배서하도록</p>	<p>“<u>값</u>” ” <u>을</u>” ” <u>병</u>” 을 “<u>은행</u>” ” <u>회사</u>” ” <u>고객</u>” 으로 문구변경</p> <p>“정한” 문구 삭제</p>
--	---	---

<p>하여야 한다.</p> <p>2. “<u>값</u>”은 수탁한 어음을 기일에 결제 가능하도록 교환회부하여 그 대전을 수탁어음 입금계좌에 입금처리 한다. 다만,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지급기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.</p> <p>3. 전 1,2 항의 업무처리시 어음에 “<u>을</u>”의 배서가 누락된 경우 “<u>값</u>”은 “<u>을</u>”을 위하여 “<u>을</u>” 명의로 배서를 대행하여 교환회부하며, 동 어음이 부도된 때에는 “<u>값</u>” 또는 “<u>병</u>”이 대행한 배서에 대하여 “<u>을</u>”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</p> <p>제 6조 어음의 반환  받을어음 <u>수탁어음</u> 업무와 관련된 어음의 반환은 다음에 의한다.</p> <p>1. 수탁보관중인 어음의 반환  수탁보관중인 어음의 반환은 어음수탁점에서만 가능하며,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에 의하여 “<u>을</u>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“<u>을</u>”이 “<u>병</u>”에게 반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“<u>값</u>”은 “<u>병</u>”에게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다만, 이 경우 “<u>을</u>”은 “<u>값</u>”에게 수탁계좌의 거래인감을 날인(서명)한 위탁유가 증권반환청구서(수탁계좌통장 사본첨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“<u>병</u>”은 수탁의뢰시 사용한 인감(서명)으로 날인(서명)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수탁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하여야 한다.</p> <p>2. “<u>은행</u>”은 수탁한 어음을 기일에 결제 가능하도록 교환회부하여 그 대전을 수탁어음 입금계좌에 입금처리 한다. 다만,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지급기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.</p> <p>3. 전 1,2 항의 업무처리시 어음에 “<u>회사</u>”의 배서가 누락된 경우 “<u>은행</u>”은 “<u>회사</u>”를 위하여 “<u>회사</u>” 명의로 배서를 대행하여 교환회부하며, 동 어음이 부도된 때에는 “<u>은행</u>” 또는 “<u>고객</u>”이 대행한 배서에 대하여 “<u>회사</u>”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</p> <p>제 6조 어음의 반환  받을어음 <u>수탁관리</u> 업무와 관련된 어음의 반환은 다음에 의한다.</p> <p>1. 수탁보관중인 어음의 반환  수탁보관중인 어음의 반환은 어음수탁점에서만 가능하며,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에 의하여 “<u>회사</u>”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“<u>회사</u>”가 “<u>고객</u>”에게 반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“<u>은행</u>”은 “<u>고객</u>”에게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다만, 이 경우 “<u>회사</u>”는 “<u>은행</u>”에 수탁계좌의 거래인감을 날인(서명)한 위탁유가 증권반환청구서(수탁계좌통장 사본첨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“<u>고객</u>”은 수탁의뢰시 사용한 인감(서명)으로 날인(서명)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수탁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“값” ” 을” ” 병” 을  “은행” ” 회사” ” 고객”  으로 문구변경</p> <p>“수탁어음” 을 “수탁관리”  로 문구 정정</p>
---	---	---

<p>2. 부도어음의 반환 부도어음은 “부도수표, 어음수령증” 을 받고 “을” 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, “을” 이 “병” 에게 반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“갑” 은 “병” 에게 반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“을” 은 “갑” 에게 수탁계좌의 거래인감을 날인(서명)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(수탁계좌통장 사본첨부)를 제출하고 “병” 은 수탁의뢰시에 사용한 인감(서명)을 부도수표, 어음수령증에 날인(서명)하여야 한다.</p> <p>3. “갑” 은 어음의 반환과 관련하여 날인된 인감(서명)이 “을” 의 수탁계좌거래인감(서명) 및 “병” 의 수탁의뢰시 사용된 인감(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도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정당한 수령인으로 간주하여 반환하기로 한다</p> <p>제 7조 수수료 등 “을”은 본 약정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 &lt;신규추가&gt;</p> <p>1.보관어음 수탁/반환수수료 가.보관어음 수탁/반환수수료란 어음수탁점에서 “을” 또는 “병” 이 수탁/반환 의뢰한 경우 발생하는 업무취급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</p>	<p>2.부도어음의 반환 부도어음은 “부도수표, 어음수령증” 을 받고 “회사” 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, “회사” 가 “고객” 에게 반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“은행” 은 “고객” 에게 반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“회사” 는 “은행” 에 수탁계좌의 거래인감을 날인(서명)한 위탁유가증권반환청구서(수탁계좌통장 사본첨부)를 제출하고 “고객” 은 수탁의뢰시에 사용한 인감(서명)을 부도수표, 어음수령증에 날인(서명)하여야 한다.</p> <p>3. “은행” 은 어음의 반환과 관련하여 날인된 인감(서명)이 “회사” 의 수탁계좌거래인감(서명) 및 “고객” 의 수탁의뢰시 사용된 인감(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여도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정당한 수령인으로 간주하여 반환하기로 한다</p> <p>제 7조 수수료 등 본 약정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가. 입금수수료: 건당300원 나. 계좌개설수수료 : 좌당 100원 (최초1회) 다. 월최저수수료 : 매월 입금수수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</p> <p>2.보관어음 수탁수수료 가.보관어음 수탁 수수료란 어음수탁점에서 “회사” 또는 “고객” 이 수탁 의뢰한 경우 발생하는 업무취급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금액은 수탁시 각각 건당 2,000 원</p>	<p>“갑” ” 을” ” 병” 을 “은행” ” 회사” ” 고객” 으로 문구변경</p> <p>“을” 은 문구 삭제</p> <p>가상계좌이용수수료 내용 추가</p> <p>이하 호체하</p> <p>보관어음 반환수수료 내용 삭제(2013.5.27 페이지)</p>
--	---	--

<p>금액은 수탁/반환시 각각 건당 2,000 원 (보관어음 1 매기준)으로 한다.</p> <p>나. “<u>값</u>”은 월중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익월 10 일(공휴일,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한다.</p> <p>다. 지급기일이 도래된 수탁어음을 수탁어음 입금계좌에 “<u>을</u>”이 입금할 경우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.</p> <p>라. 기일도래전에 수탁어음을 반환할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“<u>을</u>”이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“<u>값</u>”은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</p> <p>3. “<u>값</u>”은 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“<u>을</u>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일의 익영업일(별도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일)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.</p> <p>4.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계약의 효력 상실일에 “<u>을</u>”의 수탁어음 입금계좌(또는 수수료 결제계좌)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며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“<u>을</u>”에게 청구하기로 한다.</p>	<p>(보관어음 1 매기준)으로 한다.</p> <p>나. “<u>은행</u>”은 월중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익월 10 일(공휴일,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)에 수수료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한다.</p> <p>다. 지급기일이 도래된 수탁어음을 수탁어음 입금계좌에 “<u>회사</u>”가 입금할 경우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.</p> <p>라. 기일도래전에 수탁어음을 반환할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3. “<u>회사</u>”가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“<u>은행</u>”은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</p> <p>4. “<u>은행</u>”은 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“<u>회사</u>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일의 익영업일(별도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일)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다.</p> <p>5.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계약의 효력 상실일에 “<u>회사</u>”의 수탁어음 입금계좌(또는 수수료 결제계좌)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며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“<u>회사</u>”에 청구하기로 한다.</p>	<p>“<u>값</u>” “<u>을</u>” “<u>병</u>”을 “<u>은행</u>” “<u>회사</u>” “<u>고객</u>”으로 문구변경</p>
--	--	---

<p>제 8조 전산운영</p> <p>① “<u>갑</u>”은 “<u>을</u>”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운영의 세부사항은 “<u>갑</u>”과 “<u>을</u>”의 전산실무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9조 거래내용의 확인</p> <p>“<u>갑</u>”과 “<u>을</u>”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.</p> <p>다만, 별도의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10조 비밀보장</p> <p>“<u>갑</u>”과 “<u>을</u>”은 본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본 업무 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11조 면책</p> <p>“<u>갑</u>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.</p> <p>1. <u>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회선장애, 기타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</u></p> <p>2. (내용생략)</p>	<p>제 8조 전산운영</p> <p>① “<u>은행</u>”은 “<u>회사</u>”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보안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전산운영의 세부사항은 “<u>은행</u>”과 “<u>회사</u>”의 전산실무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9조 거래내용의 확인</p> <p>“<u>은행</u>”과 “<u>회사</u>”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.</p> <p>다만, 별도의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10조 비밀보장</p> <p>“<u>은행</u>”과 “<u>회사</u>”는 본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본 업무 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 11조 면책</p> <p>“<u>은행</u>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.</p> <p>1. <u>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회선장애, 기타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</u></p> <p>2. (좌 동)</p>	<p>“갑” ” 을” ” 병” 을  “은행” ” 회사” ” 고객”  으로 문구변경</p> <p>“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”  문구 추가</p>
--	--	--

<p>3. 제6조에 의거하여 “을” 또는 “병”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경우 거래인감(서명)등을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사항</p> <p>4. “갑”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항</p> <p>제 12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13조 변경</p> <p>① 본 약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“을”은 거래인감, 상호,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4조 해지</p> <p>본 약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면합의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“갑”과 “을”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5조 협의 및 준용사항</p> <p>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약정의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비용, “병”에 대한 협조,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내용생략)</p>	<p>3. 제6조에 의거하여 “회사” 또는 “고객”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경우 거래인감(서명)등을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사항</p> <p>4. “은행”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항</p> <p>제 12조 (좌 동)</p> <p>제 13조 변경</p> <p>① 본 약정은 “은행”과 “회사”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“회사”는 거래인감, 상호,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4조 해지</p> <p>본 약정은 “은행”과 “회사”가 서면합의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“은행”과 “회사”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5조 협의 및 준용사항</p> <p>① “은행”과 “회사”는 본 약정의 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기타비용, “고객”에 대한 협조,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좌 동)</p>	<p>“갑” “을” “병”을 “은행” “회사” “고객”으로 문구변경</p>
---	--	---

제 16 조 이하 (내용생략)	제 16 조 이하 (좌 동)	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